

의안 번호	1581	[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8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11. 8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2. 2.(월)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: 2019. 10. 29.
- 나. 취득대상 재산(총괄)
 - 1) 토지 : 22필지 22,530㎡, 2,999백만원
 - 2) 건물 : 8동 2,026.98㎡, 5,775백만원
 - 3) 그 외 자산 : 2건 3,970백만원
 - 4) 취득사유 : 학성나무학교 및 마을주차장 조성 외 3건

다. 사업계획

1) 학성나무학교 및 마을주차장 조성(일자리창출실)

가) 사업목적 및 용도

-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학성나무학교(목공방)를 조성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
- 학성가구거리 노선주차장 축소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

나) 사업기간 : 2020. 1월 ~ 2020. 12월

다) 소요예산 : 4,000백만원(국 2,000 시 1,000 구 1,000)

라) 사업규모

○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34-1 일원

○ 부지면적 : 1,451㎡(마을주차장 1,000㎡, 학성나무학교 451㎡)

○ 건축규모 : 지상 1층 연면적 270㎡

○ 주요시설 : 마을목공방(270㎡)

마) 기준가격 명세(취득)

○ 토지 : 1,002,435천원(개별공시지가 기준)

○ 건물(매입) : 819,000천원(개별주택가격 기준)

○ 건물(신축) : 550,000천원(사업비)

바) 계약방법 : 수의계약(협의매수), 일반입찰에 의한 건물 신축

2) 중구야구장 조성 변경(혁신교육과)

가) 사업목적 및 용도

○ 혁신도시 내 야구장 조성으로 인근 야구겸용 축구장과 향후
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복합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

○ 야구동호인 및 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로 구민의 건강
증진 기여

나) 변경내역 및 사유

○ 당초 : 약사동 6필지 9,900㎡, 5,000백만원

○ 변경 : 성안동 14필지 20,142㎡, 6,900백만원

○ 사유 : 2021년 전국체전 대비 정규 야구장 규모로 조성

다) 사업기간 : 2018. 2월 ~ 2021. 3월

라) 소요예산 : 6,900백만원(국 1,170, 시 3,730, 구 2,000)

마) 사업규모

○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30-3 일원

- 부지면적 : 20,142㎡
- 주요시설 : 성인야구장, 안전펜스, 덕아웃 벤치, 관람석 등
- 바) 기준가격 명세(취득)
 - 토 지 : 1,329,837천원(개별공시지가 기준)
 - 그 외 재산 : 3,300,000천원(사업비)
- 사) 계약방법 : 협의 토지매입, 일반입찰에 의한 시설 조성

3) 깨어나라 성곽도시 커뮤니티센터 조성(도시과)

- 가) 사업목적 및 용도
 -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
- 나) 사업기간 : 2020. 1월 ~ 2021. 12월
- 다) 소요예산 : 4,476백만원(국 2,238 시 1,119 구 1,119)
- 라) 사업규모
 -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118-2 일원
 - 부지면적 : 834㎡
 - 건축규모 : 지상 4층 연면적 1,197.86㎡
 - 주요시설 : 카페 및 구관장, 마을공방, 작은도서관, 교육실 등
- 마) 기준가격 명세(취득)
 - 토 지 : 118,534천원(개별공시지가 기준)
 - 건물(매입) : 115,000천원(개별주택가격 기준)
 - 건물(신축) : 4,150,000천원(사업비)
- 바) 계약방법 : 수의계약(협의매수), 일반입찰에 의한 건물 신축

4) 깨어나라 성곽도시 빈집정비 및 광장 조성(도시과)

- 가) 사업목적 및 용도
 -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 및 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 휴식 공간 제공
- 나) 사업기간 : 2020. 1월 ~ 2021. 12월

다) 소요예산 : 1,990백만원(국 995 시 497.5 구 497.5)

라) 사업규모

-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106외 4필지
- 부지면적 : 1,049㎡
- 주요시설 : 광장

마) 기준가격 명세(취득)

- 토 지 : 548,322천원(개별공시지가 기준)
- 건물(매입) : 141,000천원(개별주택가격 기준)
- 그 외 재산 : 670,000천원(사업비)

바) 계약방법 : 수의계약(협의매수), 일반입찰에 의한 시설 조성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6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2020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학성나무학교 및 마을주차장 조성에 4,000백만원, 중구야구장 조성 변경에 6,900백만원, 개어나라 성곽도시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4,476백만원, 개어나라 성곽도시 빈집정비 및 광장 조성에 1,990백만원, 총 17,36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.
- 학성나무학교 및 마을주차장 조성은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목공방 및 노선주차장 축소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중구야구장 조성 변경은 조성 부지를 당초 약사동 6필지 9,900㎡

에서 2021년 전국체전 대비 정규 야구장 규모로 조성하고자 성안동 혁신도시 내 20,142㎡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초 5,000백만원에서 1,900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- 깨어나라 성곽도시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마을카페 및 구판장, 작은 도서관, 교육실 등의 시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,
- 깨어나라 성곽도시 빈집정비 및 광장 조성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빈집 등을 매입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.
-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(생략)
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 7. ~ 11. (생략)
- ② (생략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1.20.>

④ ~ ⑤ (생략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 및 용도
2. 사업기간
3. 소요예산
4. 사업규모
5. 기준가격 명세
6. 계약방법

③ ~ ⑦ (생략)